

#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칙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(이하 '대학'라 한다) 창업교육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연구개발,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,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, 창업성공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소재)** 본 센터는 백석대학교 창업교육센터라 하며, 백석대학교내에 둔다.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
2.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산
3. 대학 내 학생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 지원
4.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
5. 그 외에 대학에서 창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**제4조(조직 및 구성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1. 센터장
2. 행정실(전담직원)
3. 운영위원회

**제5조(센터장 및 행정실)**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대학의 창업교육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센터의 행정관리업무를 위해 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, 약간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 6조(운영위원회)**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, 창업보육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학내·외 전문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, 변경
2. 예산·결산
3. 규칙의 제·개정 및 폐기
4. 그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7조(회의 및 의결)**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장 재정 및 회계

**제8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지원금
2. 정부 등 각종 외부기관 지원금
3. 각종 연구비 및 용역비
4. 그 외의 기부금 등

**제9조(회계)** ①센터의 회계는 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②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 제 5 장 기타 사항

**제10조(보안)** 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기타)** ①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
②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5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전에 수행한 모든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